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95

발의연월일: 2020. 10. 5.

발 의 자:홍기원·진성준·조응천

윤후덕 • 박영순 • 이규민

이수진 · 김승원 · 김수흥

김정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, 이주대책용 택 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고, 택지를 전매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,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받은 자에 대해서도 전매한 자와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

등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등).

법률 제 호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"자"를 "자(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, "없다"를 "없고, 누구든지 그 택지를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(價額) 및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"를 "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해당 공급계약에 서 정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(「은행법」에 따 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) 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
제31조의2 중 "전매한"을 "전매하였거나 전매받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제 1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-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택지를 전매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택지에 대한 공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19조의2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제19조의2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)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등) ① ---------자(조성된 택지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----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 (轉賣)(명의변경,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,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 다만, 이주대책용으로 ----없고, 누구든지 그 택지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. -----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.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 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,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(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) 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(價 -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택 額) 및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 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|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택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 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1조의2(벌칙) 제19조의2를 위 제 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다.

③ 제2항에 따라 택지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택지개 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를 공 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해당 공급계약에서 정한 보증 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 한 이자(「은행법」에 따른 은 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 다)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 이 지급하여야 한다.

∥31조의2(벌칙)	
전매하였거나	전
<u>매받은</u>	
	_